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8년도 제 3회)

1. 일 시 : 2018년 3월 12일 15시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회의소집통보일시	2018. 2. 28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3. 참석이사 : 5명 (이사장 남궁숙
이 사 박영창, 이상우, 박달심, 유재권)

4. 불참이사 : 3명

5. 제적이사 : 0명

6. 안 건 :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 사 : 교장 임용의 건, 교원 전보의 건,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은 2018년 2월 27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만경중학교 윤리교사 ‘강영화’ 가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1년간 2차 질병휴직을 하게 됨에 따라 결원대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자 2월에 기간제교사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1차 및 2차 재공고시에도 응시자가 없어서 2월 27일 실시한 2차 법인이사회에서 기간제교사 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경중학교는 물론 순회 지원을 하여야 하는 타학교까지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

특이하게 추가 모집을 실시하여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경중 결원대체 윤리과 임용대상자는 '신정인' 1명으로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이 확정되어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는 시간강사로 학교장이 임용하고, 기간제교사로 임용기간은 이사회심의가 확정되는 익일인 2018년 3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이 되며 성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 학교장이 제청하였습니다. 임용 대상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기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 다른 기간제교사와 달리 임용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 사 : 일단 윤리교사 '강영화'의 휴직 시작일이 2018년 2월 7일 자로 2월은 학기말 방학 기간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기이고 2018년 3월 1일자로 기간제를 임용하여도 휴직교사의 휴직만료일이 2019년 2월 6일까지로 1년을 채울 수가 없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용기간을 책정하였습니다. 1차 및 2차 공고 시 이러한 사유로 응시자가 없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달심 : 2018학년도 만경중학교 및 타학교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원으로 학교장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으므로 만경중 윤리과 결원대체 기간제교사 '신정인'은 학교장이 제청한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우 : 박달심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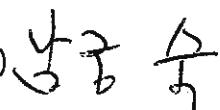
유재권 : 동의에 재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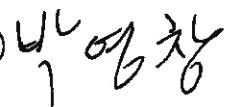
박영창 : 이의 없습니다.(참석이사 전원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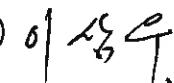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8학년도 만경중학교 휴직교원 결원보충을 위한 윤리교과 기간제교사 '신정인'은 학교장 제청 원안대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3일 ~ 2018년 12월 31까지 임용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8년 3월 12일 15시 20분

이사장 남궁숙(인) 

이사 박영창(인) 

이사 이상우(인) 

이사 박달심(인) 

이사 유재권(인) 